

신자유주의 반대!

미제국주의 동북아 질서재편 저지!

불안정노동 철폐!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

노무현정권 반대!

116th MayDay

연세대 공동자료집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 및 문화제

투쟁대회: 4월30일 2시, 을지로

문화제: 4월30일 9시, 건국대

목차

02 MayDay의 유래와 한국에서의 역사

0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08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12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

16 반성폭력 내부규약

25 Q&A마당

— 한미FTA / 송도캠퍼스

MayDay의 유래와 한국에서의 역사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임 줄 모르고
불꽃은 들불처럼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최후진술中

MayDay의 탄생

‘메이데이’는 매년 5월 1일이면 전세계 노동자들이 모여 파업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날이다. 동시에 이 날은 노동자들 앞에 놓여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노동자 단결의 날·노동자 투쟁의 날·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며, 그동안 겪은 투쟁을 기념하고 단결을 확인하는 ‘노동자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시간 쟁취와 공권력의 유혈진압에 맞서 싸운 미국의 노동자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곳곳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이로부터 다음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유럽과 미국의 크고작은 공업도시에서는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확인하는 메이데이 행사가 성대하게 펼쳐졌고, 이것이 메이데이의 연원이다.

이후 메이데이는 매시기마다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당면의 과제들을 공통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지는 국제적 노동자 연대의 기념일로 치뤄지게 되었다. 1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메이데이는 그저 평화로운 기념일로 치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지켜져왔던 것이며, 올해로 11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의 MayDay

한국에서의 메이데이는 일제 치하에 있던 1920년대부터 시작되어,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30년대까지 “8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의 확정, 소작료와 지세의 지주부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한 일본 농민의 조선 이민 반

대, 언론과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메이데이 투쟁을 펼쳤으며, ‘일제 타도’의 기치 아래 가두집회·동맹파업의 형식으로 독자적인 메이데이 행사를 성사시켜왔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민중은 자유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메이데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모아 ‘전평(전국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해방공간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립 속에, 미 군정은 제주 4.3항쟁·

여순 반란사건과 같은 공안탄압을 자행하여 전평을 무력화시키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48년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메이데이는 어용 ‘대한노총’이 주관하여 진행된다.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메이데이의 날짜를 3월10일로, 이름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가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를 빼앗아갔다. 두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성을 탈색시키고, 투쟁하는 날이 아닌 단순한 기념일로 메이데이를 전락시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투쟁을 기점으로 “역사 발전의 주인”임을 각성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어, 마침내 94년 정부는 날짜를 다시 5월1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메이데이는 또 한번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4.30 청년학생 투쟁

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은 노학연대와 민중연대, 그리고 학생운동의 선도적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해방을 위해 싸워왔다. 특히 한국의 변혁적 학생운동에게 87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노동자운동과의 연대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었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에 맞서 싸우는 청년학생들의 연대, 청년의 기세와 해방의 과학으로 무장한 선도적 투쟁은 94년 이후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를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갔다.

4.30 청년학생 투쟁대회와 문화제는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 5월 1일 노동절에 앞서 청년학생들이 가장 급진적인 요구와 목표를 내걸고 ‘독자적’으로



투쟁을 진행하는 자리로 94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4월에 펼쳐진 여러 투쟁들을 4월 말로 집약시켜내고, 노동자 민중과의 강력한 연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투쟁의 날이 바로 4.30이다. 말하자면, 4월 30일은 다름아닌 청년학생들의 노동절인 셈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반도는 화약고인가?
한국은 전초기지가 아니다!”

세계화의 두 얼굴: 신자유주의와 전쟁

2006년에도 자본의 위기, 미 해계모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의 전략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양한 분할을 바탕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저항세력들을 억압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세계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세트처럼 붙어다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세계화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재편 전략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인 주한미군 재편이다. 경제적 동맹의 성격이 강한 한·미FTA만으로는 완성하기 힘든 동북아 재편의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주한미군 재편이며, 이를 위해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이전하고자 하고있다.

평택 미군기지: ‘전략적 유연성’의 결정판

‘전략적 유연성’이란 과거 냉전시대에 불박이로 각 거점에 주둔하던 미군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기동성·정확성·타격성을 갖춘 군대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테러에 미군이 언제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 또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흔내주겠다”는 뜻이다. 지난 1월 19일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회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방어 중심’의, 한반도 내에서 지역적 제한을 갖고있던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보다 빠르게 개입하기 위해 기동타격대의 성격을 가진 군대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동북아 패권 유지’ 전략에 조응하여 미국의 동맹군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 재편은 동북아시아의 금

용세계화를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군사재편 과정인 동시에, 북한에 대한 공격과 중국과의 전쟁을 예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미군의 잠재적 타깃인 중국과 북한의 반발로 동북아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며, 역내 군비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평택은 전쟁 중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하나가 바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이다. 평택의 미군 기지를 확장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옮기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전쟁 발발시 미군의 피해를 줄이고 북한을 쉽게 공격하며, K-55(송탄)공군 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하여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 재편 계획이 순전히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에 적극 조응하여 4월에 기지 이전부지를 미국에 공여하고, 5월에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을 발족하여, 08년 12월에는 미군기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평택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4~5cm 정도 자란 농작물은 그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경작민이라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바탕을 두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생존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평택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시'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택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지난 3월15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지 영농차단'이란 명목으로 4,000여명의 경찰병력과 용역들을 동원해 평택 팽성읍 내리·도두리 일대 농지를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농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4월7일에는 경찰과 용역장패 및 굴착기·불도저·레미콘 등 중장비를 동원해 평택시 팽성읍의 대추리·도두리·본정리·내리 일대의 농업시설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뿐 아니라 이른바 '전쟁연습'을 강행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전시중원연습(RSOI)²⁾과 독수리연습(FE)³⁾을 실시했

1) 실제로 중국은 1995년 이후부터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기술 조건하의 국부전쟁' 전략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전력배가체계, C4I, 신 작전개념 등)의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병력 감축을 천명하면서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항공 우위를 중시하는 전법을 개발하고, 기존의 체계를 전략·방공·공군, 해군, 일반군의 3군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2) 한반도 유사시 전개될 미군중원 전력의 이동과 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연례 연습으로

다. 이것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선제공격 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한 것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도 참여하여 전쟁의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시화한 것이었다. 이에 북한은 장관급 회담 연기를 비롯, 연합연습 기간 중 일체의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선 우려국가'⁴⁾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미국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대북 압박에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와 평택 미군기지의 동시비판

이렇게 미국이 한편에서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미군 기지를 재편하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위협하여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다름아니다.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미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중국 포위에 한국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미FTA협상이 개시되자 중국은 러시아·북한과 함께 하바로프스크·나선지구를 포함하는 '광역 경제자유무역지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곧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체결되고, 전쟁 발발시 전초기지로 사용될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계속 진행된다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갈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역내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것은 한·미FTA가 불러올 총체적인 파급효과와 더불어, 민중의 삶을 더욱 압박하는 또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전쟁', 따로일 수 없는 양자의 옥죄어오는 폭력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116주년 MayDay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판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함께 해나감으로써만 정세적으로 가장 올바른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나가야 한다.

1994년부터 매년 봄에 실시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및 각 구성군사령부 요원들이 참가한다.

3) 후방지역 작전, 주요 자산의 전방이동 및 실전과 같은 훈련에 중점을 둔 사령부의 전구규모 연합합동 기동훈련이다. 독수리연습에는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한다. 1961년부터 매년 가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02년부터 연합전시중원연습(RSOI)과 통합되어 봄에 실시되고 있다.

4) '돈세탁 우선 우려(primary money-laundry concern)'란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미 애국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미국은 2002년 12월 우크라이나와 나우르를 돈세탁 우선 우려 국가로 지정해 굴복을 이끌어 냈고, 금융기관인 BDA도 지난해 9월 지정된 바 있다.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

“용역 회사? 현대판 노예시장이야!”

■ 학교 안에도 비정규직은 있다

학교 건물 곳곳에서 우리는 흔히 경비 아저씨를 만난다. 과/반 방에서부터 강의실까지, 드넓은 연세대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를 지키고 치우시는 분들, 그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시장의 57.1%, 그 숫자만도 855만명⁵⁾에 이를 정도다. 단순한 수치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용역업체’라는 중간 기관을 거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학교 건물마다 계약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다른데, 그분들의 임금 수준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낮다.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비정규직— 보험 모집인, 학습자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비롯해 심지어 우리가 듣는 수업을 강의하는 강사들까지, 바로 우리 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문제되고 있는 것은, 경비 절감 또는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정규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편법적인 비정규 고용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학기, 인원의 전면적인 감축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의 노동환경은 한층 더 악화되었다. 전체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월평균 50만원 이하의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저임금과 차별·노동 강도의 심화·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 등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과방이 더럽다는 불편함을 넘어 지금 이분들이 어떤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자.

■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유형⁶⁾

5)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396만명이라는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여성노동을 ‘이차적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기간제 노동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면 기간제 노동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흔히 일용직/임시직/계약직/축박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⁷⁾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별과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2>간접 고용

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도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반면 간접고용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간접고용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사용자 업주와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체결하는 중간업주가 분리된다. 그러므로 중간착취, 사용자 책임 회피, 노동3권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예가 ‘파견제 근무’지만, 이미 용역/사내하청/도급/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단시간 노동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 노동자에 비해 1시간만 짧아도 단시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보다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각종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명목상의 단시간 노동자⁸⁾가 많다.

- 6) 여기서 다루는 유형의 비정규직이 다가 아니다. 포섭/배제의 분할전략을 극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 비정규 노동의 형태는 점점 더 복잡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안정노동의 다른 형태로 호출노동·가내노동을 들 수 있으며, 갈수록 비정규직의 문제는 심화·다양화 되어간다.
- 7) 사용자의 자의적 고용 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마저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4>특수고용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운송차주, A/S기사, 애니메이터 등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명백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개인사업자'로 위장되어 근로계약 대신 위탁·도급 등의 계약 체결을 요구받는다. 즉 임금 대신 수당·수수료 등을 받으며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제반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비정규직 보호법안'¹⁰⁾은 사실 비정규직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키는 법안으로, 속칭 사업주의 편에서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①파견 허용업종의 자유화/ ②파견 허용기간의 자유화/ ③직접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로 이뤄져 있다. 즉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장기간의 파견기간을 허용하고, 파견기간이 넘은 경우에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을 두고, 비정규직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늘리는 조치로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불안정화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프랑스의 경우, '최초고용계약(CPE)'¹¹⁾에 대하여 대학생들에 이어 고등학생, 그리고 CPE가 노동 유연화의 발화점이 될 것을 우려한 노동계의 결합으로 정권 퇴진 투쟁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 전국을 들쭉이게 했다. 반면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의 일상화로 인한 탓이 크다. 보수 언론은 지금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프랑스의 상황과 부당대립시키며, 그나마 해고이유를 통보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계약안이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다.¹²⁾ 그러나 비정규 계약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수많은 희생을

8)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도 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9) 이에 대한 불만이 집약적으로 폭발한 사태가 지난 2003년의 화물연대 파업이다.

10) '보호'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이는 법안의 개정이 아닌 '계약'이라 보아야 한다.

11) 'Contrat Premiere Embauche'; 26세 미만의 노동자에게 있어 최초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법안이다.

12)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언술에 지나지 않는다. 기실 비정규 계약안은 '노동자 노예 만

치르면서 지켜온 기본적인 노동3권마저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을 알리고 스스로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CPE 투쟁의 승리는 그저 부러워할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며, 어떠한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MayDay를 바라보며 대학생들이 발언해야 하는 바는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 전 프랑스에서 그러했듯, 또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한국사회에서 올바르게 선도해왔던 노학연대의 기풍을 이어받아, 현시기의 가장 첨예한 쟁점인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만들어내야 함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대학인 각자의 삶을 갈라놓고, 무한경쟁으로만 치달게 만들면서도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갈수록 불투명해져만 가는 현실을 발언하고 바꿔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116주년 메이데이, 우리 삶의 공간에 눈을 돌려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소소한 연대(solidarity)에서부터 대학인의 미래까지 돌아보는 비정규 계약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행동의 메이데일로 만들어가도록 하자.

들기 법안'이라 할 수 있으며, 기간제는 사유 제한 없이 전면자유화 될 뿐 아니라, 2년 이내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더군다나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사용자들에게 활짝 열어놓고 있기까지 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저지

"116주년 MayDay,
대학인의 요구로 거리에 나서라!"

■ 교육비의 민중 전가— 본질은 신자유주의

연세대가 2006년 등록금을 12% 인상한 가운데, 다른 사립대들도 8%에서 11%를 넘나드는 등록금 인상을 감행했다. 이러한 인상폭은 2000년 이후 최대일 뿐 아니라 정부의 물가인상을 관리목표 3%보다도 월등한 수치다.¹³⁾ 2005년 국정감사 결과, 사립대학 적립금은 약 5조3천억원에 이른다. 4년제 대학은 매년 8-9천억원, 23년제 대학은 2천억 원을 적립해왔다. 즉 사립대학들이 명확한 적립 목적과 계획없이 쌓아놓은 돈이 5조가 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비해 2004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및 수강료는 전체 운영수입의 74.8%이고, 재단 전입금은 7.7%, 국고보조금은 1.7%였다. 전입금이 운영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4년제 사립대학은 72개로, 156개 4년제 사립대학 중 44.2%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부실한 교육재정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분야 교육재정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정도는 2002년 GDP 대비 0.3%로, OECD 평균 1.1%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이 0.3%인데 반해, 한국은 1.9%로 6배가 넘는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핑계로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지 않았고,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들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별대학의 재정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며,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확립된 체제이다. 90년대 초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서부터 시작된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 누적은,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감행하는 시기와 맞물려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교육문제들은 각각의 사안이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교육체제'를 구성하며, 따라서 각각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은 이러한 교육재편이라는 방향성을 바꾸기 위한 운동 속에서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13) 덧붙여 얘기하면, 작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6.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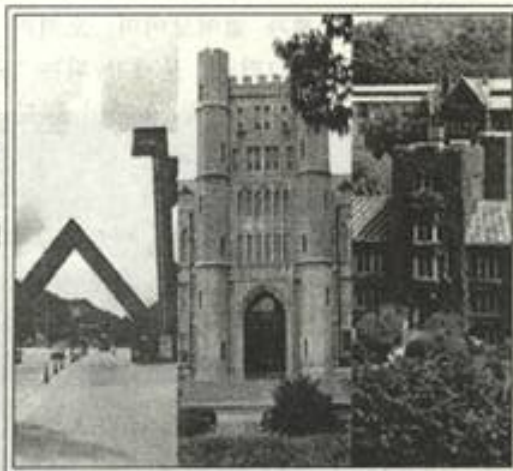
■ 지지부진 대학구조조정— 효율성과 대학다움 사이의 진실

대학정원이 대학지원자 수보다 적어지고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언론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구조조정은 경쟁력과 상관없이 대학정원만 감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특성화'는 염두에 없는 듯 보인다. 2006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11,149명을 줄였고, 전문대학은 18,486명을 줄였다. 4년제 대학은 국·공립대학이 5,804명, 사립대학이 5,345명을 감축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39명을, 비수도권이 10,010명을 감축하여 '국공립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정원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이 4,126명, 비수도권 대학은 14,360명을 감축했고, 국공립 전문대학이 912명, 사립전문대학이 17,574명을 감축하여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협박을 함으로써 양적 축소가 이뤄지긴 했으나 다투기 손쉬운 지방대와 국립대만 주로 감축을 함으로써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와 높은 사학비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학의 구조를 재편하는 목적과 방향이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전망 및 학문연구계획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효율성과 경쟁 강화, 세계대학들과의 경쟁 등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구조조정'은 기초학문 관련 학과들의 통폐합으로 나타났다.¹⁴⁾

또한 모집단위 광역화로 표상되는 대학 구조개혁은 그 자체가 허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기초학문 교수들의 반대로 서울대가 광역화를 철회한 이후, 연세대를 마지막으로 모집단위 광역화라는 교육부의 정책은 종말을 고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변화시킬 대학간 경쟁구조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며 가변적이



14) 2000년, 과감히 광역학부제를 도입한 연세대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학문 공간으로써의 대학의 본질은 도외시되었으며, 국가적 강압과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변화였음은 당시 'BK21'에 선정되기 위한 구조조정이었다는 설로 요약된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하고, 따라서 이는 '전복가능한 체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반하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교육개방— 의지만 있다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WTO 체제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굴종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외교부는 협상의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는 가운데, 비민주적으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완료가 되었으며,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역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공교육의 부실을 시장화 정책의 불가피성으로 치환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으며, 개방 문제의 쟁점을 일부 지역의 사안으로 편파적으로 한다.

세계화 시대 전세계 교육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들어 자유경쟁하는 것은 언뜻 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며, 오히려 학문의 포괄성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교육개방'은 교육기관들 사이의 학술교류나 학문연구 경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WTO와 FTA 등지에서 협상되는 내용들 중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¹⁵⁾ "교육기관 설립과 이를 통한 글로벌 교육자본의 이윤추구를 정당화할지"가 교육개방의 쟁점이며, 이는 대학들 간의 학술교류나 학문연구 경쟁과 무관한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개방의 원칙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를 주체적으로 정하는 당사자는 해당국이라는 점은 당연한 교육개방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우리의 일상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개방을 통해 초국적 자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윤'일

15) WTO의 서비스 무역협정(GATS)가 지정하는 교육서비스는 총 4종류이다. 첫 번째는 원격교육(사이버 대학 등), 두 번째는 해외유학, 세 번째가 사립학교 분교 설립, 네 번째가 이주(외국인) 교사 채용이다. 이 중 다른 3가지는 쟁점이 아니며, 논쟁은 "상업적인 주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즉 사립학교 분교설립이다. 교육간 교류의 자유가 아니라 학교설립에 관한 기본요건은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뿐 올곧은 경쟁이 아니며, 정부의 교육개방 추진정책의 함의는 종래의 공교육 개념을 포기하는 대신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비용은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사회화에 앞장서며 민중에게 교육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2006년 Mayday를 맞이하며 우리는 교육비의 민중전가와 대학 구조조정, 교육개방 등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그 드높은 파고 한가운데 서있음을 안다.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사안들 각각에 '개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사안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세계관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전략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당면한 교육재편이 우리의 일상을 박탈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비판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교육재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반신자유주의라는 관점 하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이에 따라 모든 교육주체들의 투쟁을 만들어가자.

교육권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반성폭력 내부규약

“여/남 모두가 자유로운
MayDay 힘찬 투쟁을 위해!”

■반성폭력 내규 제기의 배경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차게 연대투쟁하는 날인 MayDay 자료집에 들어가는 ‘반성폭력 내부규약’을 보고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다. 혹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반성폭력 내부규약에 지겹다며 한숨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폭력 내규가 자료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할 의미¹⁶⁾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회는 남성만을 하나의 인격체/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진보적’이라 여겨지는 투쟁의 현장에 있어서도 여성을 타자화하는 오래된 풍토가 존재한다. 투쟁하는 주체들을 통틀어 ‘형제’로 호명한다든지, 집회에서 들려오는 “Fucking USA”와 같은 노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성들은 어느 곳에서나 ‘여성’임을 강조받고 ‘여성’으로만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폭력 내부규약은 여/남 사이의 권력관계를 인지하고, 여/남이 함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우리는 이 내규가 그저 “지켜야 할 그 무엇”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했고, 따라서 올 메이데이 투쟁을 바라보며 이 내규를 논의·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즉 규약을 제정하는 것만으로 그 공간이 성폭력에 서 자유로운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규약의 존재만으로 너무 많은 안도감과 면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행위의 변화를 추동해낼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관계를 ‘여성주의적으로 전화’시켜 내는 것이다. 형식적인 약속이 오히려 역동적인 운동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적극적인 상상력과 실험이 필요한 시기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16) 그것도 상당한 분량으로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아직도 성폭력에 대해 골치아픈 것, 잘 모르는 것, 그저 조심해야 할 것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불과 몇십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 여성의 ‘성적 경험’은 ‘성’을 금기시하던 사회에서 특히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렇게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은폐되었던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을 ‘여성의 성적 권리 침해’의 문제로 온전히 이해·사회화되기 위해서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난관들이 있다. 먼저 정보수주의적 시각으로 ‘성폭력’이란 ‘정조에 관한 죄’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와 결부시켜 판단할 때,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했는가”가 성폭력 성립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거 성적 경험, 당시에 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소위 ‘빌미를 제공한 여성’에게 성폭력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며, 여성의 성은 “조신하게 처신하라”는 말 속에 억압되고, 어두운 밤에는 ‘길을 다닐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성자유주의적 시각’에서도 성폭력의 성립 여부는 복잡하다. 여성의 ‘거부’와 ‘동의’가 명확하다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패러다임은, 여성이 온전히 거부나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은폐된 성별 권력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다. 곧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사회에서 쉽게 존립할 수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성별 권력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은 주체적으로 “Yes / No”라고 말하지 못한 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책임’만을 만난다. 여성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것을 ‘무언의 동의’로 간주해버리는 **성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대해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동의’나 ‘거부’의 여부가 아니라, ‘가해자’의 성적인 행동이 과연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이루어진 것인지, 피해자가 자율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의 인지적·윤리적 조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의사 결정권으로써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권력구조 속에 피해자로 위치지워질 수 있는 성적 권력의 약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며,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실질적 권력구조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별 권력관계- 좀더 세심하게 바라보자!

여성은 그 자체로 동질의 집단이 아니다. 그렇기에 성폭력이란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단순한 구도의 문제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 성폭력이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성별 권력구조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모두 동일한 '피해자'라고 호명할 수 없으며 같은 경험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라고 느낀 여성조차 그 경험이 개인의 '특수한 것'이며 문제제기할 수 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¹⁷⁾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함이 요구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혐오감·분노라는 감정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맥락적'이며 '행위의 연속적인 총체'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는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권력 관계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여성을 '동일한 피해 집단으로만' 두며 무분별하게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는 오류를 극복할 뿐 아니라, 여성을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反성폭력 내규(초)

I. 내규 및 해설

1. 언어적 성폭력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공적 자리에서 재미를 빙자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행들이 관성적으로 있어왔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적상징·성차별적 의미를 담은 언행이나 불쾌감을 조성하는 언행,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자.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은 여학우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때로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1>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운동의 주체다.

운동주체를 남성으로 한정짓는 언사는 무의식중에 발생한다. 투쟁가 가사와 각종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노동형제'·'형남'이라는 단어는 은연중 투쟁 주체를 남성으로 한정짓는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

17)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확인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력은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투쟁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격렬한 투쟁을 하는 중에 "여성은 뒤로 가라"는 말은, 여성을 투쟁의 방해물/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말로써 주체로 서려는 여성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우리 투쟁의 목적은 단지 '힘'으로 밀고 당기는 것만이 아니다. 성과 신체적 조건을 떠나서 투쟁하려는 모든 동지들이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여성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종종 앞에 나와 발언을 하는 대상을 '격려하기 위해' 외모를 부각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러나 격려의 방식이 '외모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때로 무대에 나온 동지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대상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상황이 어떠한지, 상대방과 내가 맺고있는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세심하게 성찰하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여성에게 성적인 단어를 통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성적상징이나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있는 언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상징과 성차별은 투쟁 과정에서 투쟁가와 투쟁구호 등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가령 투쟁가에서 "흠어지면 죽는다(*된다)" 등은 성적상징을 통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4>여성은 가부장적 '여성다움'과 성역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여자가 너무 나선다"는 식의 발언은 가부장적인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말로써 여성의 활동력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다움의 틀'에 그녀들을 가두어 억압하는 발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청결도에 대한 기준이 여성에게 더욱 엄격한 현실에서, 박 일정을 수행하며 "여자가 씻지도 않냐"·"화장도 안하느냐" 식의 발언은 여성이 투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든다. 동시에 소위 '애교구호'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성이나 애교 같은 특성들을 왜곡된 형태로 드러내는 것으로, 여성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5>여/남은 이성애 중심주의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지로 함께 서 있는 여/남에게 "사귀어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여/남 모두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동성끼리 사회를 보는 경우에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성애 중심으로 사고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여성과 남성을 암묵적으로 이성애적 관계로 대하는 것은 양성 모두에게, 특히 남성중심적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더욱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성 정체성과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2. 신체접촉에 의한 성폭력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성을 남성의 자위를 위해 공인된 환상 정도로 치부하는 '가부장적 관념에 기반한 비이성적 행동'으로, 이는 여성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1>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간혹 '친밀감의 표시'라는 핑계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바로 이러한 '친밀함' 속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친밀함 속에서 여성은 뚜렷한 거부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며,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침해할 수도 있다. 주체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겉으로는 '동의'된 것으로 보이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

3.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은 언어적 형태일 수도, 신체접촉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굳이 이렇게 따로 서술하는 이유는 술자리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자리만큼, 더욱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은근히 술을 따르라는 강요나 안주를 나르는 등의 술시중을 들라는 강요가 자주 발견되곤 한다. 또한 술김을 빙자하여 여학우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해오는 일도 드물지 않다. 특히 뒷풀이 자리에서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절의를 다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성폭력 내규와 반성폭력 운동을 함께 결의했을 때는, 결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4. 성별 분업: 여성은 성별화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성별 분업이란 단지 여/남이 다른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리 '남자 일'과 '여자 일'을 나누는 경향, 여학생의 노동능력을 미리 단정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성에게는 일이 과부하되는 동시에 상대적 우월감을 갖게 하며, 반대로 여성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동일한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1>여성의 일/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전가시키지 말자.

각종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 활동에서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구분하여 전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전가시키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도 하며, 여성의 경우 '선전'과 같은 소소한 실무를 담당케 하고 남성의 경우 이와 대조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담당하곤 한다. 또한 사수대에 필요한 구성인원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일/남성의 일을 구분해 성역할을 고정할 뿐 아니라 투쟁에 있어서 여성을 주변화하게 된다. 투쟁에 있어 필요한 구성인원은 모두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여성을 보살핌의 대상이나 누군가를 보살피야 한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에 비롯된 활동을 여성의 역할이라고 한정짓지 않으며, 이를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사노동과 보살핌 등의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가족의 다른 여성 구성원에게 재생산되곤 하는데, 투쟁의 현장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 활동가는 주로 지학번 활동가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공동생활을 전제하는 활동에서는 더욱 강제된다. 이러한 고정된 성역할이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역할배치가 필요하다.

5. 환경: 여성은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환경으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남을 둘러싼 환경을 성폭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을 유발/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1>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방관 또는 논의를 봉합하지 않도록 하자.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이를 제기하기까지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또 딱딱한 일정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관·봉합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험이 부차화되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생리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와 적합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생리는 여성에게 있어 다출혈을 비롯해 복부나 허리의 질환과 빈혈, 이로 인한 행동에의 제약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은 생활 주기의 변화와 과도한 노동량 등에 의해 자신의 신체 리듬과 맞지 않는 생리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생리하는 여학우들에게 이러한 적대적 환경은 고통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하는 여학우를 위해 생리대는 물론, 진통제 등의 비치와 잠자리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여성은 남성과의 성적 차이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남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모든 일정에서 견지되어야 할, 사회의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의 분리'와는 다른 문제의식이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애써 무시하며, 균등한 역할과 부담을 부여하는 것 또한 여/남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4>성적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여성들만의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남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남성이 공간을 독차지한다든가, 여성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벌어진다. 또한 활동에 있어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여성은 많은 불편과 제약을 느끼곤 한다. 실제로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해왔고, 이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행동을 통제해오고 있다. 따라서 여/남 잠자리의 분리 등 최소한의 여성의 공간을 분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역시 여/남이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배제적이지 않은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 해결과정의 원칙

1. 피해자 중심주의

성폭력 사건 해결의 최우선의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란 사건 성립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인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건 해결 전과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시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므로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역시 남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때,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주관의 인식'을 기초로 성폭력 사건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인 것이다. 남성의 인식과 언어가 '보편'으로 간주되는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실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입장은 확연히 다를 수 있고, 결국 발언력이 큰 남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쉬움을 인식하고, 남성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 피해자와의 소통 및 지원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 신뢰관계를 쌓으며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피해자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화의 함정'이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역할을 강요하여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격려라는 미명' 하에 피해자에게 고통을 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가부장제 사회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상처의 치유는 문제를 덮어두고 피해자 스스로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재발견함으로써 가능하다. 성폭력이 상처가 되는 것은 그것을 상처로 '의미화'하는 남성 사회의 언어 때문이기에, 피해자와의 소통과 지원은 고통의 '극복'이 아니라 '남성적 언어'를 극복-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여러 방법과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가 대책위의 구성에 동의했을 경우, 성폭력 사건 대책위를 구성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방식(가해자 공개-사건 공개 등)을 결정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는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후 구성되며, 대책위의 구성원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이후 단위에서의 논의-재교육 등 후속 작업까지를 책임진다. 대책위는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해 피해자의 상처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신속한 해결을 추구한다. 더불어 대책위는 이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재교육과 소속 단위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한다.

III.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 방안

1. 피해자의 권리

- 성폭력 사건의 사건화 및 해결 과정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진행한다.
-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신뢰인을 동반할 권리
 -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및 거부할 권리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요청할 권리

-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일상적 권리를 갖는다.
-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되찾아 갈 권리
-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권리
- :불안·불면·악몽·두려움·초조함·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표현할 권리.
-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고통의 극복’을 획일적으로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성적 주체’가 될 권리
- 성폭력 사건 해결 참여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피해자 지원방안¹⁸⁾

-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이들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재단하려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전 사례와 판단을 소개한다.
-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비용을 부담한다.
- 피해자가 치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대책위의 존재 유무와 별개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연대망을 구성,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한다.



IV. 신고 및 신고메일

성폭력 사안 접수에 있어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성폭력이란 결국 공동체의 문제로, 구성원 누구나 이를 공동체 안에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 소수일 경우, 이는 피해자의 합의와 충분한 의사소통 후에 가능하다.

신고 mail: bansung-06@hanmail.net
여성주체: 자준 010.9706.8015.

18) 박지영, 「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

Q&A 마당

■한미FTA- 그것이 알고싶다¹⁹⁾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강화방침 취소/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안 취소/ 스크린쿼터의 반동강. 미국의 4대 요구안에 대한 한국의 즉각적인 수용과 함께, 2004년까지만 해도 ‘중장기과제’로 치부되던 한-미FTA가 정세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무역촉진 권한(TPA)법’이 2007년6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통상협정은 반드시 미국내 법에 따라야 한다는 우리 국내법상 관련규정이 없음은 당연하다. 이것으로도 한-미FTA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한-미FTA에 대한 몇가지 의문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해보았다.



Q.0>FTA가 다루는 분야는 무엇인가?

A.0>지난 2월2일 미국측 무역 대표부는 ‘美무역 촉진법(TPA)’에 의거, 한미FTA 협상개시 선언에 앞서 미 상하 양원에 서한을 보내, 협상의 전체틀과 구체적 목표를 명시했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미FTA는 대략 15개 가량의 장으로 구성이 될 것이며, 그 내용 자체는 미국이 싱가포르·호주·칠레 등과 최근 체결한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간략히 짚어두자.

19) 「한미FTA, 그 새파란 거짓말(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문화연대 펴냄, 2006.3)」에서 발췌, 편집.

- 1) 상품무역: 가능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여기에는 당연히 농산물에 대한 각종의 수출보조금, 관세율쿼터(TRQ)등도 포함되어 있다.
- 2) 통관업무·원산지 증명·집행 협조: 미국제품이 신속하고 적기에 통관되게끔 한국 통관 절차의 투명성·효율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3) 위생 및 검역조치: WTO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
-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WTO "무역에 관한 기술협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기술 표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 5) 지적 재산권: 미국내 법과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의 기준에 맞게끔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한다.
- 6) 서비스 무역: 정보통신·금융·전문서비스·기타 부문의 포괄적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며, 필요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특별규정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추가 규정을 요구한다.
- 7) 투자: 美투자자에게 미국내 법 원칙과 관행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투자 장벽을 축소 또는 제거한다.
- 8) 전자상거래: 전자상품 및 상거래에 대한 차별적 관세적용의 면제를 요구한다.
- 9)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와 관급계약에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한다.
- 10) 투명성/反부패/규제개혁: 미국의 기준에 맞도록 각종 제한을 없애도록 한다.
- 11) 경쟁: 한국의 사업관행, 특정 독점기업, 공기업에서의 경쟁 제한을 제거한다.
- 12) 무역구제: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가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직접적·실질적 원인이 될 때, 관세특혜의 일시적 폐지와 같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하고, 한국이 문제제기해온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 13) 환경: 통상과 환경정책이 상호지지할 수 있게끔 한다.
- 14) 노동: 한국이 무역 및 투자 장려책의 일환으로 노동법상의 보호조치를 약화 및 축소하지 않게끔 보장하도록 한다.²⁰⁾
- 15)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 절차: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한다.

Q.1>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 하에 한국이 주도한 것이라는데, 체결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A.1>한미 FTA는 미국의 일정에 맞춰 줄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정부는 2004년만 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던 한미 FTA 협

20) 물론 이때 말하는 '환경과 노동조항'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환경과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상을 2006년2월3일에 갑작스레 게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게시 선언 바로 직전에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했다. 이렇듯 급박하게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 내 상황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FTA협상은 게시 90일전부터 의회에서 협정의 타당성과 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본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90일간 검토한 후에 국회 비준에 들어가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다. 미 행정부의 '무역 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6월30일까지 FTA협상은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협상 기간이 금년 5월4일부터 내년3월 말까지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미국의 협상 일정을 일방적으로 따온 것이다. 즉 한미 FTA협상은 철저히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 데도 1년이 걸렸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 없고 협상 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협상 개시를 합의한 적이 없다.

Q.2>FTA는 국제 경제 협정의 대세인데, 수출 중심의 경제인데도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A.2>정부가 전망하는 장밋빛 전망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반해 농업·문화산업·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손해는 상식 수준에서라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할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수·축산업은 이번 FTA로 2조원 가량의 손해가 예상된다. 쌀을 포함시키면 그 손해 예상규모는 8조원에 이를 정도다. 동시에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업 개방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산업구조의 효율성 증대로 고용과 생산이 증대된다"는 주장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일 뿐이다. 미국의 FTA는 투자에 따른 일체 이행의무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 고용창출, 고용승계, 중간재의 자국산 사용, 환경보호의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²¹⁾ 한미FTA는 IMF과정처럼 대대적 구조조정을 동반해 불안정노동은 일상화

21) 신자유주의 이면의 얼굴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무역'이란 것이 국적을 초월한 자유로운 경쟁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이 고용의 창

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며, 한국경제는 "고용없는 경제성장"으로 뿌리내릴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동맹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고, 한국이 그 이득을 향유하겠다는 발상은 어리석은 환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 미국은 기업소득의 100% 본국 송금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그들은 이번 '몬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매입과정에서처럼 조세협약 등, 온갖 법적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의 이익을 한국 내로 순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Q.3>한미FTA를 통해 한국은 직접적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지않나?

A.3>정부 측은 '무역수지 -50억달러/ GDP 2% 증가/ 일자리 10만 창출'을 경제효과로 내세운다. 그러나 동일기법으로 분석해봤을 때, FTA 체결4년 뒤 무역수지 -90억달러/ GDP 0.7% 증가'22)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00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FTA체결 5-6년 뒤 대미 무역적자국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예측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對세계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한미 FTA로 미국과의 경제동맹관계가 공고해지면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이는 화려한 수사일 뿐, 3대 교역상대국이자 무역량의 17-19%를 차지하는 경제대국과의 수출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4>한미 FTA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

A.4>오히려 FTA의 결과 보건 의료 및 교육분야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과거 한미 BIT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요구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20여개 정부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 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100% 개방'을 주장하는 한미 FTA의 경우, 그 적용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그대로 자본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 서비스분야

출을 담보할 수 없으며, 한국 경제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다는 것이다.

22)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5%하락할 때 GDP는 0.35% 하락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 할 때 환율이 5%, 곧 50원 하락한다면 GDP는 약 0.35% 하락한다는 말이다. 미국측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처럼 한미FTA의 결과 GDP가 0.7%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00원만 하락해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협상에는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철도·통신·통신 등의 공공사업/ 의료/ 공교육'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에서의 개방과 민영화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와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공공서비스를 상업화·사유화함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곤계층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Q.5>농업부문에서 손실이 있어도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지않나?

A.5>한국 정부는 '쌀에 대한 예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흘리지만, 최대 수혜업종인 쌀을 미국이 양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1994년 미국·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멕시코를 통해 우리가 겪게 될 농업 분야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1993년 멕시코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였으나 FTA체결 이후 2년 새 43%로 증가했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농민들을 농장에서 몰아냈고, 대규모의 농민 실직자들이 새로이 도시빈민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의 상황에서 쌀을 포함한 농업부문 개방은 농업 전반의 연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멕시코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Q.6>농업 부문의 피해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A.6>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의 경우 농산품의 가격은 대부분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산품의 경우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2위 수준으로 규모 면에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으며, 미국은 식물검역법상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 사과·배·딸기 등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큰 폭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산품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2조~8조8천억원에 달해 여타 어느 분야보다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Q.7>한미 FTA를 통해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A.7>한미 FTA를 통해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쟁력 향상과 체질개선은 결국 '공적 영역 및 공기업의 민영화와 사유화'에 다름아니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과거 한미 BIT 협상보다 더욱 강력하게 한국의 '유보대상 공기업'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특히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및 교육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보험료 인상, 사교육비 폭등과 같

은 사회양극화로 이어져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환경/여성에 대한 폭력도 극악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8>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가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던데?

A.8>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진다는 것도 근거없지만,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조악한 관점일 뿐이다.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져,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한미 FTA와 동시에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전술적 활용 변화²³⁾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등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불모로 한국에게 협박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대한(對韓) 외국인 투자의 구조적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2004년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 국내주식보유는 43%로서 명실상부 세계최고수준이며, 그 중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공장설립형(Greenfield)'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M&A형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가뜰이나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서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더불어 흔히 FTA의 효과로 언급되는 '선진경제의 첨단기술, 경영노하우 이전' 등 부수효과는 미국형 FTA에서 언급하는 투자자에 대한 일체의 '이행의무 강제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철저히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장(場)이 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Q.9>스크린쿼터 축소가 한국 영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며, 일정정도의 양보는 한미 FTA 체결에 도움을 줘 국가 경제에 일조할 것이라는데?

A.9>지난 8년간의 스크린쿼터 논란을 통해 밝혀졌듯 영화산업 성패의 판권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이다. 87년 헐리우드 영화 직배허용 이후 60%가 넘는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93년 15%로 바닥을 쳤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FTA 협상 개시에 앞서 '스크린쿼터 50% 축소'를 기습 발표했다. 이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바를 협상 이전부터 충실히 따른 것이다. 미국은 당장에 스크린쿼터 73일을 예외로 인정할지 몰라도, 멕시코의 사례처럼 완전

23) 이미 앞서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글에서 살펴보았듯, 미국의 동북아 재편 전략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양자를 동시화장에 기인하는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현재 점유율 50% 이상이 넘는 한국영화도 멕시코와 같이 10%대로 추락할 것임은 분명하다. 영화산업의 특성상 '쿼터 축소→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상영일수 미달→쿼터 추가축소' 식의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4000억원의 재정지원책과 예술영화상영관 증설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식 FTA의 내국민 대우조항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제소할 가능성도 높다.

Q.10>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된 뒤,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수 있지않나?

A.10>미국은 한미 FTA는 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 언급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히 미국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에 입각해 한미 FTA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다. 경제협정 차원을 넘어서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한반도 평화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재편'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로 이라크 파병/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미군기지 재편과 같은 쟁점적 사안에 대해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성 확보에 온전히 실패한 이라크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지난 베트남전 때와 유사한 과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문제점이다. 외부적으로도 미국 해게모니 역시 EU 결성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결국 그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인데, 그 많은 나라들을 두고 유독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미국이 나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적 실익뿐 아니라, 미 해게모니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명확히 밝히고, 한미 FTA와 평택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전쟁기지화를 함께 비판할 필요성이 있다.



■ 지금 학교에서는— 4.13 송도캠 공청회

지난 4월13일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관련 공청회'가 신촌과 원주의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세달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이기에, "보다 구체적 계획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참석했던 자리였다. 그러나 학교본부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총장님이 약속한 '공론화' 과정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거나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

신촌과 원주에서 각각의 구성원을 대표해서 참석한 패널과 방청객들의 질문이 한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단 2분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원주 교명 의장님이 답답한 나머지 '원주캠퍼스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발언까지 하며, 진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무시할 당했다. 학내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학교본부의 비민주적 태도에 이제는 교수와 직원, 동문들마저도 분노하고 있다. 최초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세달이 지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5월 한달뿐이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공청회 한두번 더하고 송도캠퍼스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결코 좌시할 사안이 아니며,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절실한 때다.

4.13 송도캠 공청회 Q&A

1. 교수평의회 김지홍 부의장

- 1>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기밀 부분만 제외할 수도 있지 않나.
- 2>잘될 것이란 전제로 핑크빛 전망만 말할 뿐, 리스크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
- 3>장기적 목표가 설정된 후 '송도'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2. 학부대학 김용학 학장

- 1>'원주'를 만들 때, 10년 후면 잘될 것으로 판단했었지만 지금은 회의적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는가.
- 2>투자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 3>신촌에 있는 기능(ex.대학원, 조교 등)이 송도에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
- 4>집단별로 점검하는 연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부대학 학생자문단과 심층토의해보니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 많다.

3. 신촌 직원노조 김도연 수석 부위원장

재원이 마련된다 해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수익모델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4. 원주 직원노조 문병재 위원장

현 총장님이 부임하면서 기숙형 대학에 관해 원주와 논의를 진행하다, 갑자기 송도로 변경됐다. 원주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5. 이성호 총학생회장

- 1>최종결정은 누가 하는가. 건설추진단의 이후 결정과정에 학생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2>교육기관으로서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있는 것 같지 않다.
- 3>송도 개발이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것이냐. 외국인들을 위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이 내국인을 위한 특혜지구가 되지 않겠냐는 의혹도 있다.
- 4>4월 말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에 대해 답변해달라.

6. 동아리연합회 김세현 집행부원

- 1>'산학협동'이라면 학부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가야 적절한 것 아닌가.
- 2>추진단에 학생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 결정권을 가진 학생이 있어야 한다.

[답변]서승환 건설기획본부장(기획실장)

- 1>제정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고, 언젠가 이야기하겠다.
- 2>각종 콘텐츠는 더 수렴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
- 3>자치단위는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꾸려나갈지 학생 스스로 고민했으면 한다.
- 4>리스크가 높지만 위험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때로 희생도 필요하다.
- 5>소문처럼 4월30일에 계약 체결하지 않는다. 정확한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송도 캠퍼스—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자치 활동의 붕괴

학교본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 동아리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신촌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송도캠퍼스에는 1학년 학부대학 학생들이만 있게 된다. 선배가 없는데 신입생들이 입학하자마자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해서 1년만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아리는 수업 조모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1학년과 2~4학년 학생들의 생활공간 자체가 다른데 매일 저녁 선배들이 송도캠퍼스까지 찾아오지 않는 한 선배와의 단절은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있는 학생회 체제와 동아리 등 학생 자치단위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치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외국어능력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2. 이공계 캠퍼스 분리

학교본부의 계획에 따르면 송도캠퍼스 건립의 2차 사업에는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조성을 하게 된다. 송도 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IT·BT 관련기업과 연계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학과가 송도캠퍼스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이다. 이과대와 공과대의 전체 학과가 아니라 IT·BT와 연관이 있는 학과만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공계 학생들은 송도캠퍼스에 1학년 때 1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 4년을 모두 송도에서 보내고, 대학원도 송도에서 다니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이공계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1학년을 마치고나면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송도캠퍼스는 폭넓은 지적안목 구비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계획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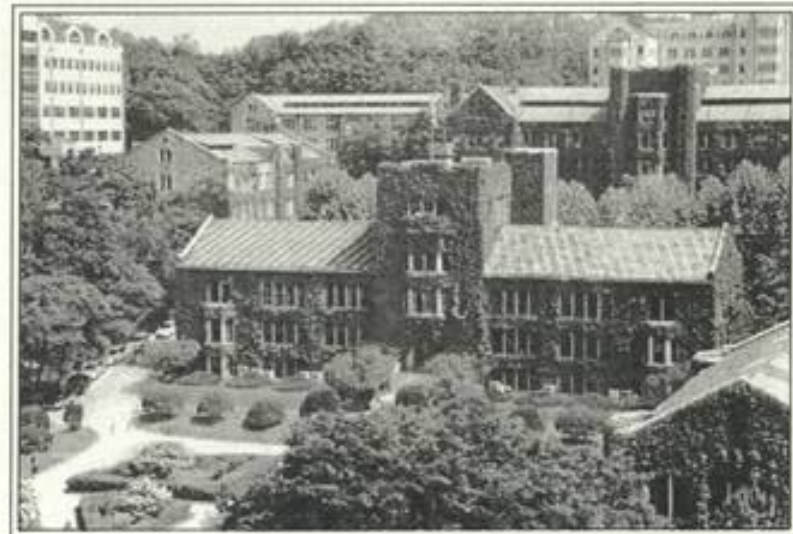
3. 등록금 폭등 우려

우선 수업료 외에 기본적으로 기숙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 신촌 캠퍼스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집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그런데 송도 캠퍼스에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한다. '최저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숙사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숙사비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업료 자체가 폭등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송도에 들어설 고등학교까지의 국제학교 등록금부터가 2,000만원이 넘을 예정이다. 송도에 외국대학도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외국대학

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²⁴⁾ 경제자유구역은 규제가 거의 없어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더라도 정부에서도 막기 어려운 곳이다. 미국 사립대학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마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4.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인천시에서 땅을 시가의 1/10에 판 것도 경제자유구역개발이 원래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이다. 실제로 외자유치실적은 굉장히 낮다.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의 상류계층을 위한 특혜지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덧붙여 '굴비상자' 사건으로 부정의혹이 있었던 안상수 인천시장이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사실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새로운 캠퍼스의 건립보다 지금 있는 캠퍼스의 개선이다. 수많은 대형강의와 듣고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는 수업권의 문제부터 과방·동아리방의 자치단위 생활공간도 변변치 못한 지금의 교육환경 개선이 먼저이지, 무리하게 수천억원을 투자해서 송도까지 굳이 갈 이유가 학생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24)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 교육자본의 수업료가 천정부지 치솟을 것임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더구나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보다 오히려 내국인 중 상류계층을 위한 특혜지구로 왜곡변질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Memo

